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218호

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고시내용 :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*

* 금번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'05년 「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」(건설교통부고시 제2005-204호)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

2. 결정취지 :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
유기적 연계·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

3. 기타문의

-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,
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(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총괄과,
☎ 044-201-4458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